

42.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교육위원회(2019년 10월 17일),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책지원국장 이경훈)

### □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례를 「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통합 운영

### □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통합하여 「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
-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-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소속 공무원들의 겸직허가 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7조)
-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및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(안 제14조)
- 「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‘유치원’ 및 ‘학교’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전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- 주요 내용으로는
  - ▶ 「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통합하여 「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
  - ▶ 안 제2조에서, ‘학교’, ‘운영위원회’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  - ▶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,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▶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,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▶ 안 제7조에서, 소속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겸직허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
- ▶ 안 제10조에서,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▶ 안 제11조에서,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
- ▶ 안 제12조에서,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및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함
  - ‘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’을 ‘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의4제1항제1호46)에 해당하는 사항’으로 확대
  - ‘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’을 ‘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의4제2항47)에 해당하는 사항’으로 확대
- ▶ 안 제14조에서,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
- ▶ 안 부칙 제2조에서, 「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46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9.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47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>

1. 법 제32조제1호,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
## ○ 검토 결과

- ▶ 본 전부개정조례안은, 내용의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사항에 대해 ‘유치원’ 및 ‘학교’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, 상위법령인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17.12.29.)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(부패영향분석과-813, 2017.3.23.)을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음
- ▶ 특히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<sup>48)</sup>에 규정된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,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,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, 학교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8)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(기능) ① 국립·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7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8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
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10. 학교급식
11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12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13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4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- ▶ 따라서,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는 이번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## 5. 토론요지

- 없 음

## 6. 수정안요지

- 없 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